

BOK 이슈노트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

배문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
Tel. 02-750-6647
msbae@bok.or.kr

양아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
Tel. 02-750-6649
aryang@bok.or.kr

2014년 6월 17일

본고는 전자금융업자 등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IT기술의 발전과 전자지급수단의 보급으로 다양한 주체가 진출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 영역에 대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지급결제 시장은 금융기관이 근간을 이루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과 경쟁적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전자지급결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주체가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게 됨에 따라 정보보호, 규제 및 감독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관련 업계의 유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먼저 감독당국은 관련규정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업계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도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주체인 금융기관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다양한 주체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가 축적·보관

I. 검토배경

금융IT의 발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식카드, 전자지급이체 등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보급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행태는 변화를 지속해 왔다.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쇼핑,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은 일상적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전자지급수단의 결제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는 현금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¹⁾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승인을 위한 정보 송수신, 대금정산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를 맡아서 수행할 주체들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주체인 금융기관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자, 유통업체 등도 모바일(스마트폰) 결제를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주체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보관됨에 따라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로서 개인정보 등의 취급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의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전자지급수단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면서 다수의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²⁾를 행하

1) 지급결제 과정은 지급(물품 등의 대금을 내는 것), 청산(금융기관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 결제(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품·용역·자본 등의 거래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로 지급, 결제 또는 지급결제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급결제 과정을 단계별로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② 전자지급이체업무
③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⑥ 전자상거래의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결제대금예치업)
⑦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전자고지결제업)

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비금융기관³⁾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 규정된 바대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망 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전자금융업자

2014.4.4일 현재 61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5개 종류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제공

〈표 1〉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등록 현황
(2014.4.4일 현재)

(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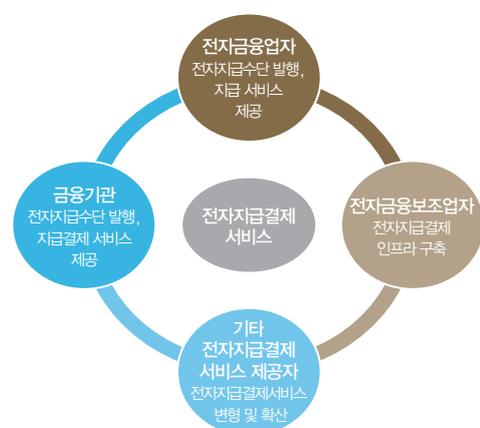
업 종	등록업체 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5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2
결제대금예치업	18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8
전자고지결제업	5
합 계	105개 업종 (61개사)

자료 : 금융위원회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적절히 취급하고 보관할 의무를 진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취급·보관

〈그림 1〉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3)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대신 '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범위를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금융기관으로 대체하였다.

가.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급현황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상거래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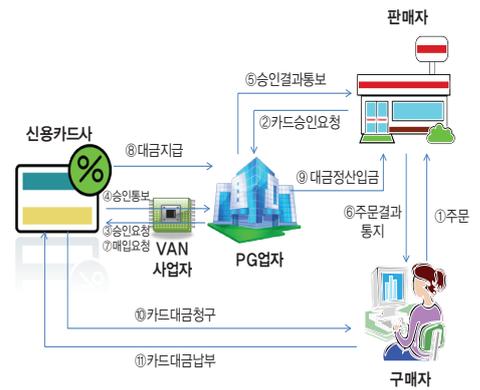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업자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선호⁴⁾되면서 PG서비스는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PG업자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신하여 카드사들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 승인요청 및 카드사로부터의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PG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PG업자로부터 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물품 판매 대금을 전달받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증개하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결제를 위한 조직과 장비 등을 구비하기보다 전문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도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각종 비용과 리스크⁵⁾를 결제서비스 전문 업체와의 대표계약을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였다.

〈그림 2〉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처리 절차 (신용카드 P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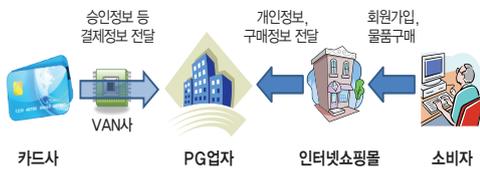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승인결과(카드번호의 일부 또는 전체 포함), 계좌번호와 같은 결제정보 등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매출취소, 결제오류 등 거래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물품 등의 거래정보 및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그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거래과정에서 동 업체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결제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급결제수단은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중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구성비 : 카드 74.9%, 계좌이체 19.9%, 전화화폐 1.6%, 기타 3.6%)
 5) 신용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맹점의 실제 영업여부 확인과 결제한도 부여 등의 업무처리절차가 발생하며, 정보 송수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보안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림 3〉 PG업자의 정보입수 경로
(신용카드 P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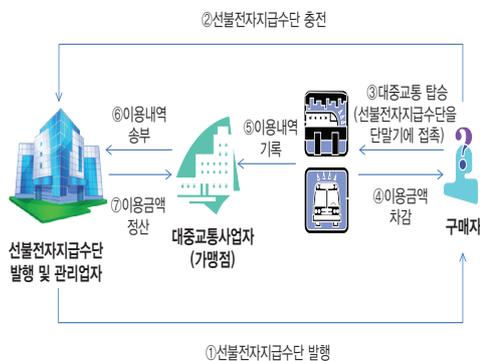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중교통 탑승요금 지불과 같이 소액의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영역에 보다 빠르고 편리한 지급수단을 필요로 하면서 등장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범위는 대중교통 등 초기의 한정된 범위에서 온·오프라인의 물품구매 대금지급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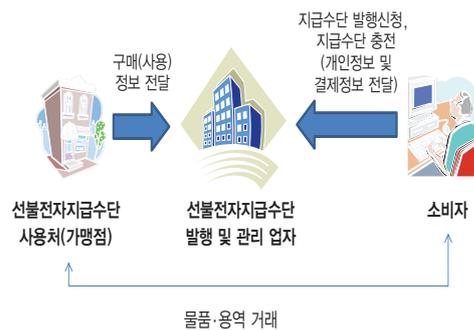
〈그림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업무처리 절차
(무기명식 대중교통 탑승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시 전자지급수단의 소지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명식과 기명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대부분 별도의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있으나 기명식의 경우 발행시 성명,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일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금충전편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식의 충전방식까지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그림 5〉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정보입수 경로 (기명식 기준)



(결제대금예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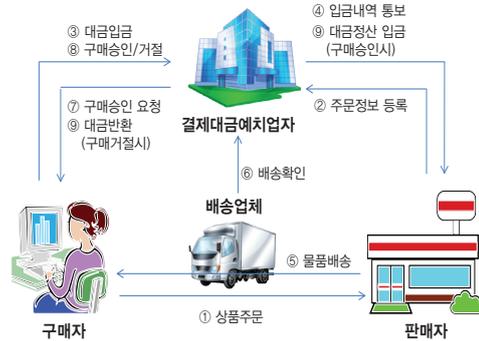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의 비대면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가 적절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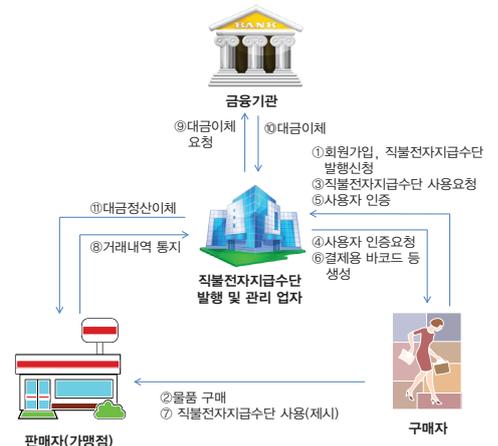
결제대금예치업이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에스크로(Escrow)라는 용어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6〉 결제대금예치업 업무처리 절차



카드와 차별화된다.

〈그림 7〉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업무처리절차 (오프라인 사용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는 업무수행 과정이 유사하여 현재 모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PG업을 겸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수집 과정은 PG업자와 유사하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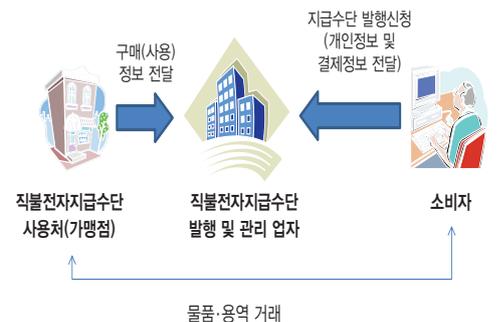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므로 기명식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거래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림 8〉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정보입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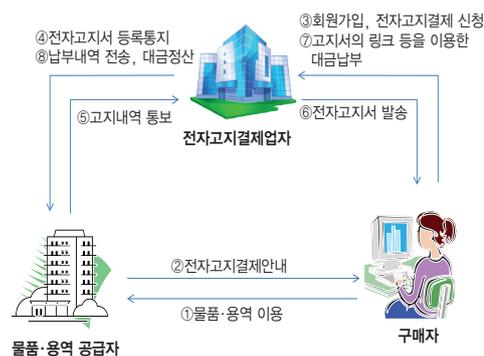


(전자고지결제업)

전자고지결제업은 수취인(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을 대신하여 지급인(물품 또는 용역 구매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고지서 등)을 전자적인 수단(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아파트관리비, 우유 배달대금 등 정기적인 대금 지급을 위한 고지서 발행과 대금납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고지결제는 종이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비, 우편요금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서 출발하였다. 전자방식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들이 대금수취 및 정산기능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면서 전자고지결제업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9〉 전자고지결제업 업무처리절차



전자고지결제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 제공자와의 업무 대행계약을 통해 거래정보(청구액)를 입수하며, 전자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통해 지급하고자 하는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전자고지결제업을 위해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PG업자가 수집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와 같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금을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그림 10〉 전자고지결제업 정보입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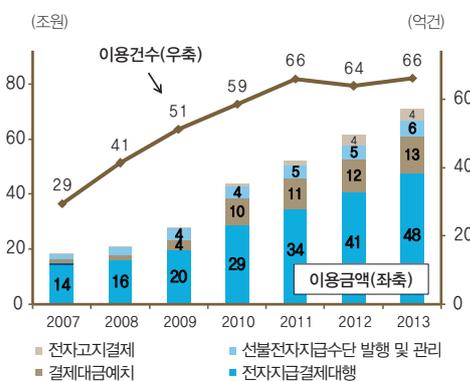


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사업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실적은 2007년중 29.4억건, 17.4조원에서 2013년중 66.1억건, 71.1조원으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26.4%(금액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향후 온라인 쇼핑 규모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실적은 2013년중 66.1억건, 71.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그림 11〉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년중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는 47.5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건수기준으로는 52.8억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3년중 전자금융업종별 서비스 제공 실적

(백만건, 십억원, %)

	건수	금액
전자지급결제대행업	973.0 (14.7)	47,535.0 (66.9)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5,275.7 (79.8)	5,649.8 (8.0)
결제대금예치업	339.3 (5.1)	13,490.0 (19.0)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3 (0.0)	11.1 (0.0)
전자고지결제업	22.6 (0.3)	4,367.0 (6.1)
합 계	6,610.8 (100.0)	71,052.8 (100.0)

주 : (<)내는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전자금융업자는 시장 선점업체와 후발 주자간 서비스 규모의 격차가 크며, 이에 따라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전자금융업계는 고객 및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장 특성상 전자금융업에 조기 진출하여 동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수의 업체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중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의 업체별 점유율(금액기준)을 살펴보면 상위 4개사가 전체 서비스 금액의 56%를, 상위 10개사 기준으로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81%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가 최초로 부여된 2007년에 등록을 필한 것으로 나타나 동 업종의 시장선점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자는 시장 선점업체와 후발 주자간 서비스 규모의 격차가 크며, 이에 따라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금융업에 후발 주자로 진출한 경우 대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및 종업원수 현황 (2013년말 기준)

(자본금 현황)

(업체수)

	전업	겸업	합계
20억원 이하	11	2	13
20억~50억원 이하	6	9	15
50억~80억원 이하	3	7	10
80억~100억원 이하	2	2	4
100억원 초과	8	11	19
합 계	30	31	61

(종업원수 현황)

(업체수)

	전업	겸업	합계
50명 이하	17	6	23
50명~100명 이하	5	2	7
100명~300명 이하	8	7	15
300명~500명 이하	-	2	2
500명 초과	-	14	14
합 계	30	31	61

주 :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전업)와 타업무와 병행 또는 타업무 수행과정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영위하는 경우(겸업)로 구분
자료 : 한국은행

2.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네 가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신용카드 VAN), 둘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은행 VAN), 셋째,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넷째, 상기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 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용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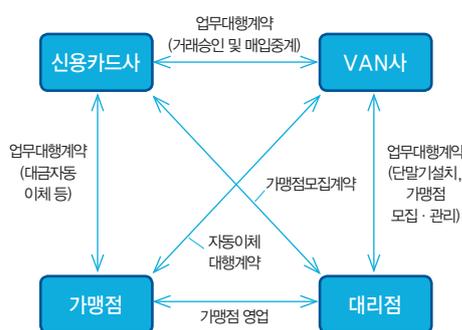
가.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급현황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신용카드사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단말기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고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 수거 및 매입 요청 등의 업무도 중계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온 가맹점 확보를 위한 영업인력 확충, 거래승인 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 단말기 보급 등에 따른 고정비 지출 감소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를 전문적으로 담

당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면서 등장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들 또한 개별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던 가맹점 계약 및 대금회수 절차를 신용카드 VAN사업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이점을 얻게 된다.

〈그림 12〉 신용카드 VAN사업자 업무구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인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수집

한편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업체에 따라 결제 단말기를 통해 각종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1~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사업규모

신용카드 VAN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으로 미루어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13년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IC카드 등의 사용건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대체적으로 전자 금융업자에 비해 종업원 및 자본금 규모가 큰 실정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수⁶⁾는 115억건에 이른다. 또한 2013년말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226만개로 이중 대부분은 VAN사업자를 통해 카드 승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사 협회에 따르면 2014.3월말 현재 영업중인 VAN사업자는 16개(비회원사 4개 포함)이며, 대부분의 VAN사업자는 VAN대리점과의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VAN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카드 가맹점 모집과 결제 단말기 보급, 전표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VAN대리점은 약 2천여개⁷⁾로 알려져 있다.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에 비해 다량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처리하며 자체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비해 종업원 및 자본금 규모가 큰 실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대개 VAN업무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며 타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 4〉 신용카드 VAN사업자 자본금 및 종업원수 현황 (2013년말 기준)

(자본금 현황)			
(업체수)			
20억원 이하	20억~50억원 이하	50억~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	4	6	5

(종업원수 분포)			
(업체수)			
50명 이하	50명~100명 이하	100명~500명 이하	500명 초과
1	6	6	2

자료 : 한국은행

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 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확장하고 전자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지갑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스마트폰) 결제영역을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가.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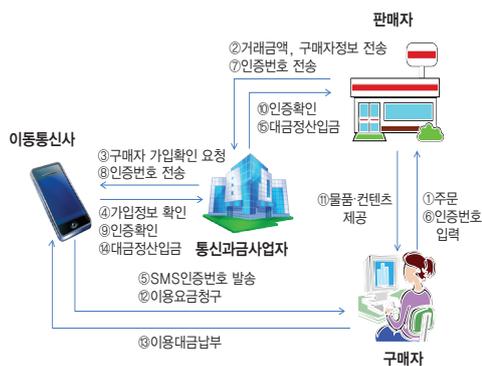
통신과금사업자의 업무 유형은 전자지급결

6) VAN사업자는 신용카드 승인 정보 송수신 및 매입 청구를 주 업무로 수행하나, 업무처리 과정이 유사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 IC카드 등과 관련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7) 대부분의 VAN대리점이 다수의 VAN사와 중복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VAN대리점 수의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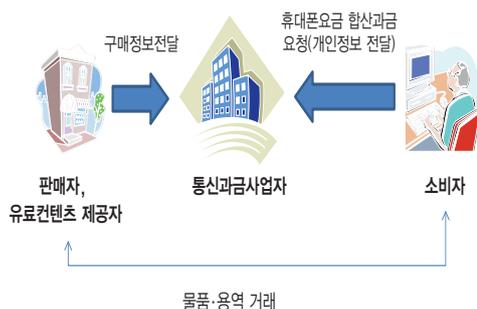
제대행업자의 서비스 형태와 유사하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물품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을 구매할 때 유·무선 전화료 등의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통신과금사업자는 사용자 확인, 인증번호 전송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중계하고 통신회사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수취한 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그림 13〉 통신과금사업자 업무처리 절차 (무선전화 결제방식 기준)



통신과금사업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매개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용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게 된다.

〈그림 14〉 통신과금사업자의 정보입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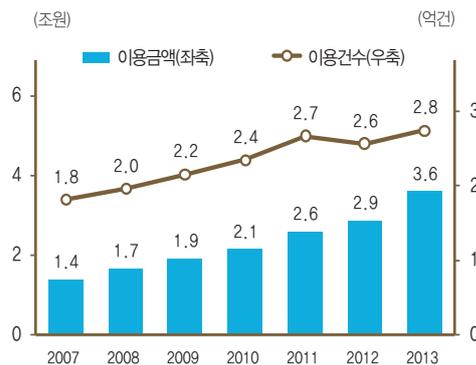
나. 서비스 제공 실적

2014.3월말 현재 30개(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업자 19개 포함)의 통신과금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실적은 2007년중 1.8억건, 1.4조원에서 2013년중 2.8억건, 3.6조원으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17.3%(금액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3년중 통신과금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은 전자금융업자 지급결제서비스 금액의 5.1% 수준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대금을 유·무선 전화료 등의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

2013년중 통신과금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13년중 2.8억건, 3.6조원으로 전자금융업자 지급결제서비스 금액의 5.1% 수준

〈그림 15〉 통신과금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Ⅲ.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1.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며, 한국은행은 통계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을 통한 감시업무를 수행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요건⁸⁾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등 서류검사를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실지검사는 매년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는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보다는 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쇄적인 도산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한국은행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계조사권,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⁹⁾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전자금융보조업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영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인 신용카드 VAN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기보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 형태를 취하고 있다.¹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감독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정보통신망법」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역시 통신과금사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상세한 감독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과금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실적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은행의 통계조사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

8)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으로 업종에 따라 5억원~20억원의 최소자본금 보유,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인력 5인 이상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9) 한국은행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은 전자화폐발행업 및 전자지금이체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전자금융업자가 없어 이같은 공동검사 요구권의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10)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VAN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VAN사업자로 하여금 VAN대리점을 관리할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3.10일)한 바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서비스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조사도 주로 전자금융업자 등에 한정되면서,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실적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실적과 혼재되어 새로이 출시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되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적으로 감독을 수행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IV. 향후 과제

개인정보 등의 관리 확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 등장 등과 같은 여건 하에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 대응이 요구된다.

1. 감독당국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게 되나, 정보수집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 간에도 정보수집 범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범위를 제시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전자금융업자에게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정보보안 강화대책은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전자금융업자가 소규모의 자본금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향후 정보보안 인력 및 조직 강화 등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여 이외에 전자금융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 또는 법령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감독 수준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

11)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보상한도 2억원, 이외의 전자금융업자는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그 유형과 피해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이 충분한 배상능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자료요구권 및 통계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금융업자 등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현황 및 정보취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은행의 감시결과가 감독당국의 업무지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급변하는 전자지급결제 시장 동향에 맞추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산하에 다업종간 전자지급결제와 관련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경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지급결제 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관련 업계

관련 업계에서는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전자지급결제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자발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급하는 구매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수단과 관련된 금융정보의 축적을 최소화하

〈참고문헌〉

- 고평기, “최신 글로벌 지급결제 트렌드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4호, 2013.
- _____,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현황과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2013.
- 김서영,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 51호, 2013.
- 김소이,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7호, 2009.
- _____, “스마트폰과 지급결제 부문의 컨버전스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9호, 2010.
- _____, “IT 컨버전스형 지급결제서비스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9호, 2010.
- 김시홍, “전자금융의 컨버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9호, 2012.
- 김필수, “스마트폰의 확산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2호, 2010.
- 노진호, 김문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분석 및 대응방안”, 하나 금융정보 제 32호, 2012.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2006.
- _____,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법적 고찰”, 2007.
- 여신금융협회, 계간 여신금융, 2014.
- 이동규,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3-7, 2013.
- 이정희, “신용카드 뱅산업의 역할 및 수익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3.
- 정주봉,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경제적 효과”,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4호, 2013.

통계청, 2013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보도자료, 2014.

한국금융연구원,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2006.

한국은행,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3,
2008.

_____,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_____, 2013년중 비금융기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보도자료, 2014.

ecos.bok.or.kr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02-759-53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